



시 보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

제59호 2023. 12. 06(수)

선 람	기관의 장

규 칙

- 남원시 규칙 제738호 남원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1
- 남원시 규칙 제739호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3

예 규

- 남원시 예규 제39호 남원시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일부개정지침-----5
- 남원시 예규 제40호 남원시 불법 주정차 단속 지침 일부개정지침-----7

회 람										
--------	--	--	--	--	--	--	--	--	--	--

남원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친 「남원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3년 12월 6일

남원시 규칙 제 738 호

남원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

남원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를 “발언할 수 있고, 의결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대리출석) ① (생 략) ② 대리출석한 사람은 의안에 대하여 <u>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u>	제9조(대리출석) ① (현행과 같음) ② ----- ---- <u>발언할 수 있고, 의결할 수 있다.</u>

남원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친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3년 12월 6일

남원시 규칙 제 739 호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1호 중 “상시노동자가 5명 이상이고, 신청일”을 “신청일”로 하고,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① (생략)</p> <p>② 제1항의 지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u>상시노동자가 5명 이상이고, 신청일 현재 관내에 소재하며,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기업, 다만 창업일부터 5년 이내의 중소기업은 상시 노동자수와 관계 없이 지원</u></p> <p>2. 3. (생략)</p> <p>③ (생략)</p>	<p>제10조(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u>신청일</u> ----- ----- ----- <u><단서 삭제></u></p> <p>2. 3.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남원시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일부개정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3년 12월 6일

남원시 예규 제39호

남원시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일부개정지침

남원시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사용자 준수사항 등) ①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p>1. <u>녹화 또는 녹음 시작과 종료 전에 녹화 또는 녹음 시작 및 종료 사실을 고지. (다만, 녹화 또는 녹음 사실을 사전에 고지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현장 상황이 긴급한 경우 등에는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등록할 때에 고지를 못한 사유를 기록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u></p> <p>2. ~ 6.(생략)</p>	<p>제5조(사용자 준수사항 등) ① ----- ----- -----.</p> <p>1. <삭제></p> <p>2. ~ 6.(현행과 같음)</p>

남원시 불법 주정차 단속 지침 일부개정지침 일부개정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남 원 시 장

직인

2023년 12월 6일

남원시 예규 제 40 호

남원시 불법 주정차 단속 지침 일부개정지침

남원시 불법 주정차 단속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승강장, 인도 등 4개 구역에 대해서는 단속 유예시간을 5분 이상 제공한 후 단속을 실시한다.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무인카메라 단속 방법)</p> <p>① (생 략)</p> <p>②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무인카메라 단속은 불법주·정차된 차량에 대하여 20분 이상의 유예시간을 제공한 후 단속을 실시한다. <단서 신설></p> <p>③ ~ ⑦ (생략)</p>	<p>제6조(단속시간) ① (현행과 같음)</p> <p>④ ----- ----- ----- -----</p> <p>--. 다만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승강장, 인도 등 4개 구역에 대해서는 단속 유예시간을 5분 이상 제공한 후 단속을 실시한다.</p> <p>③ ~ ⑦ (현행과 같음)</p>